

2020년 1월 16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축산경영과 과 장 송태복(044-201-2331), 사무관 이상훈(2338)/ 제공일: 1월 15(총 9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## 축산계열화사업 관리와 농가 권익보호가 강화됩니다.

- 축산계열화법(2019.1.15. 개정·공포) 1.16일 시행 -

### 《 주 요 내 용 》

- 축산계열화사업의 관리와 축산농가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2019.1월 개정된 「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」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됨
  - ① “축산계열화사업 등록제 도입”으로 사업자 관리·감독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강화
    - 계열화사업자는 법인요건, 고정사업장을 갖추어 시·도에 사업 등록
  - ② “계열화사업자 책임 강화”로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
    -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및 계열화사업자 준수사항 확대, 농식품부 직권조사 및 계열화사업 등급평가제 도입 등
  - ③ “계열화사업자 정보공개”로 투명한 사업운영과 농가의 알권리 보장
    - 사업현황, 계약조건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시·도에 등록하고 농가와 계약체결 전 제공 의무, 닭·오리고기 판매가격 공시제 시행 등
  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는 축산계열화사업의 관리와 축산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2019.1.11일 개정·공포된 「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(약칭 : 축산계열화법)」이 금년 1.1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.

- 그동안 가금 등의 분야에서 계열화가 진전되면서 축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은 높아졌으나, 일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농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, 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2019.1.15일 축산계열화법이 개정되었다.
- 농식품부는 2019.1.15일 개정된 축산계열화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1년여에 걸쳐 축산계열화법 시행령,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제·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, 1.16일 축산계열화법을 시행하게 되었다.
- “축산계열화법 시행령”은 지난해 11.19일 개정·공포되었으며, 동 시행령은 계열화사업 등록이 가능한 법인요건 및 등록절차, 부정한 방법으로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, 계열화사업의 영업정지로 인해 축산농가에 불이익이 우려될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방법 등 축산계열화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.
- “축산계열화법 시행규칙”은 금년 1.16일자로 개정·공포되었으며, 동 규칙은 계열화사업 정보시스템 운영, 정보공개서의 등록·변경 등록 등 절차,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, 분쟁조정의 절차 및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축산계열화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.
- 이와 함께 축산계열화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축산계열화사업 등급평가,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(零)세율을 적용받는 계열화사업자의 범위, 계열화사업 관련 사육시설,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기준, 계열화사업의 표준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 등 5개의 고시를 제·개정하였다.

◆ 고시 제·개정 주요 내용

- (등급평가) 계열화사업자 평가·등급결정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평가 기준 및 등급결정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규정(제정)
- (사료부가가치세 영세율)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에 한해 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(개정)
- (사육시설 등 기준) 공정한 거래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육시설, 사육 자재 및 출하가축 등에 관한 기준 강화(개정)
- (표준계약서) 계열화사업 거래관계에서 표준화된 계약상 의무, 입식·사육·출하의 기준 등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사업자별 다른 계약 조건은 부칙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(제정)
- (정보공개서 표준양식) 계열화사업자의 편의를 높이고, 농가에게 실효성 있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양식 마련(제정)

□ 1.16일 시행되는 축산계열화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.

**① “계열화사업 등록제 도입”으로 사업자 관리·감독과 농가 권익보호를 강화한다.**

- 계열화사업자는 법인 요건\*과 고정사업장을 갖추어 계열화 사업을 시·도에 등록하고, 거짓등록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록취소 등 제재\*\*를 받게 된다.

\*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, 「민법」에 따른 법인, 「농어업경영체법」에 따른 영농 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, 조합공동사업법인 등

\*\* 계열화사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등록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

- 새로이 계열화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인 재무제표, 정관, 계약서 사본, 계열화사업 시설·장비 및 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에 제출하여 등록하고, 기존 사업자\*의 경우에는 2020. 7. 15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.

\* 사업자 현황(계열화율) : 육계 65개(92.1%), 오리 21개(96.8%), 돼지 17개(14.2%)

- 또한, 축산계열화법 보호대상\*에 종계와 종오리 사육농가가 추가됨에 따라 계열화사업자가 종계·종오리 사육농가와 종란 납품에 관해 계약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.

\* (현행) 돼지, 육계, 토종닭, 산란계, 오리, 염소 → (개선) 현행 + 종계, 종오리

- 계열화사업 등록제를 통해 부적격 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하여 계열화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, 축산농가의 권익 보호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.

## ② “계열화사업자 책임 강화”로 농가와 공정한 거래관계를 만든다.

- 계열화사업자는 축산농가와 작성하는 계약서에 가축의 소유자와 가축의 사육실적평가 및 농가지급금 산정방식 등을 명시해야 한다.
- 쌍방 간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담아 사용할 것을 권장함으로써 상호 간에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 간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였다.
- 또한, 계열화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없도록 축산농가와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대폭 확대(11→34가지)하였다.

### ◆ 계열화사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(신설)

- 품질 낮은 병아리의 공급에 따른 농가피해 예방을 위해 종계, 종오리의 주령을 제한(육계 64주령, 토종닭 68, 산란계 72, 오리 78)
- 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정산결과의 농가통지 의무
- 축산법상 사육밀도기준을 초과하는 병아리의 농가입식 제한
- 계약내용, 가축·사료 등의 품질, 농가지급금 산정방식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제한
-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부여 의무 등

\* 계열화사업자가 법을 위반하면 위반행위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, 최근 5년간 과태료 3회이상 처분시 사업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5억원이하 과징금

- 농식품부는 계열화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을 경우 법적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나 시정조치, 분쟁조정 등을 하게 된다.
- 계열화사업자의 사회적 책임, 공정성 및 사업운영 수준 향상을 위해 계열화사업자별로 2년마다 사업현황을 평가하여 우수, 양호, 보통, 미흡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한다.
- 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 상호간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, 상호간 책임과 의무, 권한을 분명히 하여 공정한 거래관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.

**③ “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”를 통해 투명한 사업운영과 농가의 알권리를 보장한다.**

- 계열화사업자는 사업현황, 계약조건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계열화사업 등록과 함께 시·도에 등록하도록 하고, 계약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축산농가에게 제공해야 한다.
- 계열화사업자는 관할 시·도에 정보공개서 등록을 2020. 7.15일 까지 마쳐야 한다.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서에는 정보공개서, 재무제표, 계약농가 현황 등을 첨부해야 한다.
- 2020.7.15일 이후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체결하는 계약부터는 농가가 계약내용을 다른 계열화사업자의 조건과 충분히 비교·확인할 수 있도록 계열화사업자는 농가에게 최소 14일간의 검토기간을 주어야 한다.
- 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는 농가가 다른 계열화사업자의 계약조건 등과 비교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한다.

○ 2017. 9. 1일부터 자율 시행되고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제가 이번 축산계열화법 개정·시행으로 의무화되고, 공개대상이 오리까지 확대됨에 따라 닭·오리 계열화사업자는 닭·오리고기의 크기별·판매대상별(프랜차이즈, 대규모점포, 대리점 등) 판매량, 매출액 및 매출단가를 판매일의 다음날 12시까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.

- 소비자는 매일 공개되는 가격정보를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 ([www.ekape.or.kr](http://www.ekape.or.kr))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- 닭·오리고기 판매가격 공개제도의 확대 시행은 닭·오리고기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고, 시장기능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되어 소비자에게 투명한 가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축산계열화법 개정·시행으로 농가의 권익 보호는 물론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관리·감독이 강화되어 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가 상생 발전하는 공정한 축산계열화 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.

○ 아울러, 축산계열화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가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, 지자체, 축산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들의 자발적 준비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.

- 참고 1. 축산계열화사업 현황 및 문제점  
2. 축산계열화법령 개정 주요 내용

## 참고 1

### 축산계열화사업 현황 및 문제점

- (축산계열화사업 정의) 계열화사업자가 어린 가축과 사료 등을 농가에 공급하고, 농가는 가축을 사육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다시 출하한 후 사육비용을 지급받는 사업
- (축산계열화사업 현황) 육계와 오리는 사육주기(육계 32일, 오리 45일)가 짧은 특성 등으로 대부분 계열화사업으로 운영

#### < 계열화사업자 현황 >

구분	대기업 계열회사 (자산총액 10조원이상)	중견기업 (자산총액 5천억원 ~ 10조미만)	중소기업, 조합 등 (자산총액 5천억원미만)
합계(103개)	7개(하림, 한강CM 등)	13개(참프레, 마니커등)	83개

\* 계열화 비율 : 육계 92.1%(65개 업체), 오리 96.8%(21개), 돼지 14.2%(17개)

\*\* 돼지는 긴 사육기간(6개월)으로 자금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계열화비율이 낮은 편

#### □ 성과 및 반성

- 계열화사업을 통해 사업자는 가축, 사육자재 및 사양기술을 표준화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고, 축산농가는 판로 걱정없이 안심하고 가축의 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어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
- 다양한 형태의 계열화사업이 발전하면서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축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은 높아진 반면 일부 계열화사업자의 경우 불공정 거래행위\* 존재

\* 일부 계열화사업자의 품질 낮은 병아리·사료 공급, 사육수수료의 지급 지연, 일방적인 가축사육실적 평가방식 및 계약내용의 변경 등의 갑질 논란

## 참고 2

### 축산계열화법령 개정 주요 내용 ('20.1.16일 시행)

#### □ 주요 내용

구분	법	시행령	시행규칙
① 계열화사업 등록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미등록 영업행위 금지</li> <li>○ 계열화사업의 등록제 도입을 위해 등록요건 및 절차 규정</li> <li>○ 계열화사업 변동사항 신고의무 규정</li> <li>○ 계열화사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근거 신설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계열화사업 등록요건 및 절차 구체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계열화사업 등록대상 가축의 종류 규정</li> <li>○ 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및 심사절차 등 규정</li> <li>○ 계열화사업 변경신고 절차 등 규정</li> <li>○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</li> </ul>
②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근거 마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과징금 부과기준, 과징금 부과 및 납부 절차 등 마련</li> </ul>	
③ 계열화사업 정보시스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계열화사업 등록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및 자료제출 요구 근거 신설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보시스템 운영 방법 등 규정</li> </ul>
④ 계약서 명시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계약서 명시사항 추가(기존 4가지→15)</li> </ul>		
⑤ 가축사육실적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 공급하는 가축의 사육실적평가 근거 마련</li> </ul>		
⑥ 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가의 사육경비 수령 지연 등 피해보상 위한 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체결근거 마련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의 요건 규정</li> </ul>
⑦ 농가지급금 등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가지급금 등 지급방법 및 기한 등 규정</li> </ul>		
⑧ 계열화사업자 준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금지행위의 유형을 종합적·포괄적으로 규정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 또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</li> </ul>
⑨ 정보공개서 등록제 (* '20.7.16일 시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등록, 변경등록·신고 의무 신설 및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규정</li> <li>○ 계약체결 전 농가에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신설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보공개서 등록, 변경등록·신고 절차 및 방법 등 마련</li> <li>○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및 농가 제공 방법 등 규정</li> </ul>
⑩ 계열화사업자 등급평가제 (* '20.7.16일 시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계열화사업자 평가, 등급결정 및 결과 공표 등 근거 마련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계열화사업자 평가 및 등급결정의 기준, 방법 및 절차 등 규정</li> </ul>

구분	법	시행령	시행규칙
111 계약농가협의회 및 중앙 농가 협의회	○ 계약내용 등 중요사항의 변경시 농가협의회 (또는 농가)와 협의 의무 신설 ○ 중앙농가협의회의 설치 근거 마련		○ 계약농가협의회 및 중앙농가협의회 구성·운영 방법 등 마련
112 분쟁조정위원회	○ 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 변경*, 정원축소(9명 → 7) 및 임기 연장(2년→3) * 이해관계인 등 배제, 법률가 및 학계 등 전문가 보강		
113 분쟁조정 신청·조정	○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절차 등 마련		○ 분쟁조정위원회 구성, 운영 및 조정 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
114 위반행위 조사	○ 법 위반행위에 대한 농식품부 직권조사 근거 마련 및 조사 절차, 방법 등 규정 ○ 시정조치·시정권고 근거 마련	○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절차 및 방법 등 규정	○ 법 위반행위 신고 및 조사 방법, 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○ 시정권고 절차 마련
115 축산물 판매가격 공시제	○ 계열화사업자의 축산물 판매가격 보고 의무 신설		○ 축산물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의 절차, 방법, 대상 및 범위 등 규정
116 서면실태조사	○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거래에 관한 서면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근거 마련		
117 계열화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	○ 계열화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의한 계약 농가의 손해에 대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		
118 공무원 의제	○ 분쟁조정위원회 민간의원의 형법상 뇌물죄에 대해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		
119 벌칙	○ 계열화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추가 및 강화		
120 양벌규정	○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종업원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 당사자 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해당 벌금형을 처분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		
121 과태료	○ 축산계열화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상한액 상향(3천만원 → 5) 및 처분사유 추가	○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	